

## ●법제처공고 제2023-65호

「민법」 제38조(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) 및 「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9조(설립허가의 취소)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,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04월 05일

법제처장

###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

1. 처분내용: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

2. 처분대상 비영리법인

| 연번 | 법인 명칭          | 설립허가일         | 대표자 | 사무소 소재지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사단법인 21세기법경포럼  | 2002. 2. 25.  | 김홍대 |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 610호  |
| 2  | 사단법인 한국사이버법제학회 | 2004. 12. 21. | 성선제 |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, 2층 |

3. 근거법규: 「민법」 제38조 및 「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9조

4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: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미제출 등 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

5. 취소처분 일자: 2023년 3월 31일

6. 기타사항

- 취소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7. 문의처: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(담당자 전해정 서기관 ☎ 044-200-6554)